

ESG위원회 규정

주식회사 에프엔에프

제정 2022. 06. 30

개정 2023. 02. 01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상법 제 393조의2 및 주식회사 에프엔에프(이하 '회사' 라 함) 정관 제47조 및 이사회 규정 제 11조에 근거 하여 ESG위원회(이하 '위원회' 라 함)의 구성 권한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환경·사회·지배구조와 관련된 리스크 방지 및 관리를 통하여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의 취지와 상관례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제 2 장 구성 및 권한

제3조(구성과 임기)

- ① 위원회 위원 (이하 '위원' 이라 함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이사 임기와 동일하며 이사의, 자격을 상실하면 위원의 자격도 당연 상실한다.

제4조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이 규정 제9조에서 정한 결의방법에 따라 위원 중 1 인을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으로 선정한다.
-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,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권한)

- ① 위원회는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, 의결한다.

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.

제 3 장 회 의

제6조(종류)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.
-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7조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8조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소집을 서면, 전자우편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9조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,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10조(부의사항)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회사의 ESG 정책수립등 전략방향, 계획, 관리 및 이행 관련 사항
- ② 회사의 ESG 활동에 관한 주요 성과 및 ESG 주요이슈 평가, 개선 사항
- ③ 회사의 ESG 역량 개발 및 내재화를 위한 지원 조직 구성등 필요 사항
- ④ 중대성 평가 기반으로 회사의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재무적 위험 요소 검토
 - 반부패, 안전보건, 인권, 공급망 지속가능성, 소비자 권익 침해, 지역사회 관련 위험 등
- ⑤ 기타 위원회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등 지속경영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

제11조(관계인의 출석 등)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의 부의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·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하여,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2조(통지의무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3조(지원조직)

- ① 지원조직은 제10조 3항에 따라 구성된 협력체로 한다.
- ② 지원조직의 조직장은 제15조의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.
- ③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사 내 지원조직은 업무에 대하여 각 사업부 기획, 마케팅, 소싱 등 및 공통 재무 부서를 포함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정보 및 업무현황 자료 요청 및 협업 요청을 할 수 있다.

제14조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15조(간사)

-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 이외의 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, 위원회 사무전반을 담당 처리한다.

제16조(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.